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 이천경남중학교 https://kyeongnam.goeic.kr	**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**	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자

학교 교육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오며,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학교 정규고사와 관련하여 평가시기에 결시할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귀 자녀가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

1. 2차 지필고사 기간 : 3학년 : 2022.11.29.(화) ~ 2022.12.01.(목)
2학년 : 2022.12.14.(수) ~ 2022.12.16.(금)

2.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

가. 근거 : 이천경남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

나. 세부기준

1) 100%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

-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시
-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(증인 출두)
- 교육기관(교육부,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)의 공문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'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'로 인한 결시
- 경조사로 인한 결시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
-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경우(학교장 내부결재 후)
-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시인 경우는 해당학년의 지필평가 과목평균 점수를 적용한다.(학기 중 지필평가를 1회 실시하는 교과 포함)

2) 80%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

- 질병으로 인한 결시: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또는 증빙자료(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) 등 첨부
-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(의사의 소견서 첨부)의 경우
- 미세먼지(초미세먼지), 오존 등과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

서(의사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를 학기 초에 제출한 경우
-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
-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(예 :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시-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함)
-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

3) 당해 지필평가의 해당 과목 성적의 최하점 미만(최하점－1점)을 부여하는 경우(단, 최하점이 0점인 경우 0점 부여)
- 미인정결시
-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시
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시
- 부정행위자

4)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경우.
-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(특별준수사항)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
-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경찰청 「소년업무규칙」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
- 기타 심의가 필요한 경우

3. 코로나 19관련 2학기 2차 지필평가 가이드라인 안내

1. 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

- 확진·유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,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, 타인과 접촉 최소화,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
※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

2.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(인정 비율 100% 반영)

-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*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(소견서 또는 진단서) 확인 등 조치 필요

*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

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

-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
-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

※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

- ①고사기간 전에 확진·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②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% 반영
- 비교육적 행태 예방·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**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(응시→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% 반영**

2022. 11. 11.

이 천 경 남 중 학 교 장 